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지출한 예비비 승인의 건은 결산과는 별도로 사후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으로서 97년도 폭설, 가뭄대책, 가로수 상록화, 호우피해, 긴급방제 등 17건의 사업에 대하여 7억484만4천원을 지출한 것으로서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예비비 운영상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년도 예산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
-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, 지출액결정 중 불용액 과다여부, 연례적 반복사업임에도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가 요구된다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8. 9. 2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